

채권 양도(환매) 예정 통지

씨에스씨25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예정인")는 2025.06.26. 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아래 각 양수예정인("양수예정인")으로부터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25.11.10. 자로 아래 양수예정인("양수예정인")에게 재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양도예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7항에 의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예정인에게 이전·제공 할 예정이며,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위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본 통지서 [별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양도예정인		
매입사	주소	대표자 이사
씨에스씨25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60, 502호 (도봉동, 한밭법조타워)	윤원민

양수예정인			
매각사	주소	대표	자산확정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김용석	2025-04-18

- 채무조정 요청권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연락처 (☎ 02-3277-92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 정 내용에 대 해 동의 여부 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세무사가 동의 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 인하면 채무 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별첨1. 양도예정채권 명세 >

* 양도예정채권 명세

(자산확정일 기준 금액)

No.	양수예정인	계약번호	채무자명	생년	성별	양도예정일	원금	기타비용	이자금	합계금	장래이자면제여부	자산확정일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1407519	오지유	1974	여	2025-11-10	4,192,180	-	7,007,930	11,200,110	Y	2025-04-18
2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1407615	홍금녀	1960	여	2025-11-10	1,196,086	294,248	384,360	1,874,694	Y	2025-04-18
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1407616	홍금녀	1960	여	2025-11-10	254,442	-	82,980	337,422	Y	2025-04-18
4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1408019	박미애	1967	여	2025-11-10	18,428,910	14,528	17,575,980	36,019,418	Y	2025-04-18